## 조선충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942호(號) 1915(大正 4)년 9월 22일

## 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35호(號)

1914(大正 3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546호(號) 일본·만주·러시아 연락운수 여객 및 수하물 임률규칙[日滿露聯絡運輸旅客及手荷物賃率規則] 제1편(編) 임률적용규칙(賃率適用規則) 중 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한다.

1915(大正 4)년 9월 22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백작(伯爵) 데라우치 마사타케(寺內正毅)

- ·제14조(條) 제2호(號) 제3항(項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한다.
  - ①러시아철도(露國鐵道) 및 동청철도(東淸鐵道)에서는, 여객은 역장(驛長)의 승인(承認)을 받아 객차(客車) 내(內)에 실내 수조류(室內獸鳥類)를 휴대(携帶)할 수 있다. 단,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(不快感)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정(限定)한다. 만약 동승차(同乘車) 중(中) 1인(人)이라도 청구(請求)하는 자(者)가 있을 때는, 그 수조류는 수하물차 (手荷物車)로 옮겨 탑재(搭載)해야 한다. 실내 수조류(室內獸鳥類)를 객차 내에 휴대할 경우에는 특별임률(特別賃率)에 의거하여 요금을 징수하고, 실내 수조류를 객차내에 휴대하는 취지(趣旨)를 기입(記入)한 영수증(領收證) 또는 특별권(特別券)을 발행한다. 새장 안[籠入]의 작은 새를 휴대수하물로 하여 객차 내에 소지(所持)하는 경우는 무임(無賃)으로 한다.
  - ②철도원(鐵道院), 조선철도(朝鮮鐵道) 및 남만주철도(南滿洲鐵道)에서는 모두 수조류를 객차 내에 휴대할 수 없다.
- ·제15조 제3호 말미(末尾)에 아래[左]의 일 항(一項)을 부가(附加)한다.

일본(日本) 및 남만주행(南滿洲行)의 여객이 탁송수하물(託送手荷物)을 동청철도선(東淸鐵道線) 내(內)에서 수령(受領)하고자 할 때는 당해(當該) 수하물을 만주리역(滿洲里驛)에서 중국세관[支那稅關]의 검사(檢査)에 위탁(委託)하기 위하여 열차(列車)가 동역(同驛)에 도착(到著)하기 전(前) 상당(相當) 시간 내(內)에 미리 인도(引渡)의 청구(請求)를할 것을 요(要)한다. 여객은 본(本) 규정(規定)의 수속(手續)을 취하지 않으면, 동청철도선(東淸鐵道線) 내(內)에서 수하물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.